८मी ञो	الإجالة الحالة	•				
[별시	제5호서식]	•				
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						
° 2. ±		위 동의자 명의의 소득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 <b>공동의자</b>	· 및 재산 내용 리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			
	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동의확인 (서명)	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동의 <sup>1)</sup>	
				인		
○ 동의자 범위(조사대상자 범위) : 환자 가구, 환자의 부양의무자 가구						
	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동의확인 (서명)	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동의	
				인		
				인		
				인		
				인		
				인		
3. 동의서의 유효기간 : 작성일로부터 2년 뒤 소득재산조사 시행 년도 말						
4.	동의서의 작성	<b>년월일</b> : 년	월 일			
5. <b>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</b> :시구·군 보건소						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 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						
	인적사항 및 가 에 관한 정보, 활보장은 본인, 보, 노인 및 징 보상보험·출입 <sup>3</sup> 신망(행정정보공	그밖에 수급권자를 선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남애인은 본인 및 배 <sup>5</sup> 라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당동이용 포함)을 통해	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기   및 그 배우자 정보,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·  P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=  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<b>정기적으로 관계기관</b>   <b>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</b>	·족관계등록 인, 배우자 국민연금·고	ł전산정보(기초생 및 직계비속 정 용보험·산업재해	
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						

그 기간이 경과하면 **파기함을 고지합니다**.

위의 사항을 확인 힙	니다.
-------------	-----

월 일 년 (서명 또는 인)

동의자(환자가구)

시 통합조사팀 귀하

## <안내 및 유의사항>

- 의료비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 지원대상 자격 박탈 동의자(환자, 환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)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
<sup>1)</sup>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 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sup>※</sup>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